동지가 금속노조다!

# 대전충북지부

14호

발행인 : 조민제
발행일 : 2014년 1월 27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콘티넨탈 자본**
**반드시**
**대가 치를 것**

**500일의 고통, 드디어 끝난다!**

콘티넨탈 자본이 막무가내로 저지른 만행으로 2명의 노동자가 벼랑 끝에 몰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해고되어 무려 500일의 해고자의 길을 걸었다. 그리고 드디어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판결을 이끌어냈다. 정말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 나온 사실에 이렇게 기뻐해야하는 현실이 슬프지만, 어찌됐든 2명의 해고자 동지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충분히 기뻐해야할 일이다.

**아무리 봐주려해도 봐줄 수 없는 해고 만행**

그동안 법원이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채로 자본에 편향적인 판결을 연속해서 내놓으면서 우려가 컸다. 부당해고라는 점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지만, 최근 법원의 행태를 보면 안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콜텍의 정리해고를 합법적이라고 인정하고, 통상임금은 소급분을 청구하기 어렵게 난도질을 해놓고, 노동자 투쟁에는 엄격한 처벌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인정한 것도 모두 자본 편향적인 법원의 작품이었다. 그런 법원도 콘티넨탈의 해고는 차마 인정하기 힘들었나보다. 아무리 양심 따위는 개나 줘버린 재판부라고 해도 콘티넨탈의 만행은 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콘티넨탈지회가 2012년 교섭 중 조정신청에 들어가자 지방노동위원회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행정지도를 내렸다. 그러자 콘티넨탈 자본은 행정지도를 이유로 금속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고 헛소리를 해대기 시작했고 그것을 이유로 당시 지회장과 부지회장을 해고했다. 당시 콘티넨탈 자본의 헛소리가 이제야 법원의 판결로 확실히 판명된 것이다.

**부당해고를 넘어 노조파괴에 역습을 하자!**

노조파괴 사업장의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금전적으로, 심리적으로 차별에 시달리는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존심을 지켜가며 금속노조를 사수하고 있다. 그런 조합원들의 단결력이 이번 판결을 이끌어낸 힘이었을 것이다. 이제 부당해고 판결의 기세를 이어서 금속노조 재조직과 현장 권력 쟁취로 나아가자. 그동안 자본의 온갖 추태와 악행들로 위축된 현장에 반격을 가하자. 일단 저지르고 보는 콘티넨탈 자본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자!

모든 해고자 동지들이 복직되는 순간까지!

## 함께! 끝까지! 투쟁!

# 유치하고 치졸한, 그렇지만 잔인한 차별

차별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질낮은 행위 중에 하나다. 그래서 유치원생도, 초등학생도 사람을 차별하면 안된다는 건 제일 먼저 배운다. 그런데 이걸 아주 즐겨하는 질낮은 곳이 있다. 바로 노조파괴로 복수노조가 설립된 사업장이다.

보쉬전장에서는 최근 2014년 임단협이 시작됐다. 그런데 시작된지 3일만에 임단협이 마무리 되어간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어용노조가 회사와 합의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금속노조가 단일노조인 시절에도 4~5개월씩은 걸렸고, 복수노조가 된 후로는 금속노조와는 2년째 교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소식이다. 아무튼 보쉬전장 어용노조는 2013년 임금 동결에 이어 2014년에도 조합원의 권익은 아주 가볍게 날려버렸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쉬전장 자본은 아주 치졸한 짓을 했다. 어용노조에게 요상한 이름의 타결금을 준 것이다. 성과급 형태면 금속노조에도 동일하게 지급해야되기 때문에 각종 이름을 갖다붙여서 타결금 형태로 지급한 것이다. 금속노조를 금전적으로 차별하려고 아주 조잡한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콘티넨탈도 다르지 않다. 아직 2014년 교섭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미 2012년, 2013년 교섭에서 어용노조에게 타결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 금속노조에게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력하게 비추고 있다. 심지어는 비조합원들에게도 전부 지급했으면서도 금속노조에게만은 죽어도 주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이런 차별은 아주 유치하고 치졸하다. 그렇지만 같은 현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임금마저도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 금속노조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차별이 난무하는 현장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다. 하나씩 하나씩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현장으로 바꿔나갈 것이다.

## 통상임금 대법 판결도 제멋대로 해석하는 노동부

노동부가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확대, 왜곡 해석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아래 지침)을 발표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노동부 지침은 통상임금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하고, '신의칙 적용' 문제를 확대 적용해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권리를 '원천 봉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지어 노동부는 통상임금 문제가 연공급 임금체계 때문이라며 일방적으로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변호사는 "노동부가 지극히 사용자 위주의 기준을 세워 대법원 판결 진위를 왜곡했다"고 규탄했다. 신 변호사는 "노동부가 발표한 지침은 어떠한 법적 구속력, 규범력을 가지지 않는 일방 지침일 뿐이다. 사업장 노사가 이 지침을 따라야 할 아무런 의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지침에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고정성이 없음을 주지한다'며 정기성 요건을 충족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신 변호사는 이같은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1981년부터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이 확정돼 있다면 상여금 지급기간 만료 전에 퇴직한 노동자라도 상여금을 근로의 대가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며 "여전히 규범력을 가지는 판결이 있음에도 재직시점 지급 기준 하나만으로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한 것으로 통상임금 인정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의 신의칙 적용을 오히려 확대 적용해 미지급 임금 청구하는 것을 불허한다고 지침에서 밝혔다. 신 변호사는 "설령 대법원 다수의견에 따르더라도 원칙적으로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임금 청구가 제한되는 것"이라며 "노동부는 임금 청구 제한이 원칙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신의칙 적용 여부는 노동부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월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노조를 소멸시키기 위한 해고는 부당해고"

노조활동을 위해 임직원의 이메일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내려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된 조장희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이 2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사내통신망을 비업무용으로 사용한) 조씨의 행위가 취업규칙 130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지만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했다"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삼성그룹 내부문건인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을 부당노동행위 증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이 작성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에 의하면 회사측은 노조를 소멸시키기 위해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조를 없애기 위해 해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회사측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증거로 인정한 것에 대해 소송을 맡은 강문대 변호사(법률사무소 로그)는 "해당 문건은 부당노동행위를 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남긴 것과 같다"며 "앞으로 삼성의 노조 관련 소송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 주의 사진

※ 사진 제보받습니다_iswcool@naver.com



<1.21 코스모링크지회 모범조합원 수상>



<1.24 콘티넨탈지회 부당해고 승소>




<1.25 충북 시국대회_유성영동지회>




<1.26 밀양 송전탑 반대 희망버스>